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4.9일(화) 배포))

담당	과기정통부	연구개발정책과	과장 황판식, 사무관 장정인 (044-202-4520, 4523)
		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과장 박태완, 사무관 이강용 (044-202-6230, 6231)
		연구제도혁신과	과장 이제준, 사무관 임나리 (044-202-6950, 6953)
	산업부	산업기술개발과	과장 이재식, 사무관 조원철 (044-202-4530, 4534)
	중기부	기술개발과	과장 윤세명, 사무관 오보언 (042-481-4441, 4452)
담당기관	한국연구재단 조우현 기획총괄팀장(042-869-6100), 송계영 연구위원(6512)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진 전략기획팀장(042-612-8110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박효준 책임연구원(053-718-8315)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이승규 선임연구원(02-6009-3243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노용 평가팀장(02-3469-8361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 (042-388-0210), 지동훈 차장(0211)		

중소·중견기업 연구개발(R&D) 부담 2조원 경감

- 정부, R&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, 이하 '산업부'),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(장관 최기영, 이하 '과기정통부'), **중소벤처기업부**(장관 박영선, 이하 '중기부')는 **중소·중견기업**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**위기**를 조기에 **극복**하고 사태 종료 후 **새로운 기회**에 **선제적**으로 **대응**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개발(R&D) 부담 2조원** 규모 **경감**을 추진한다.

○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**제4차 비상경제회의**에서 확정·발표된 「**위기를 기회로, 수출 활력 제고방안**」의 **후속조치**로 이 제고 방안의 **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**을 담고 있다.

□ 이번 조치는 중소·중견기업 대상 **설문조사와 간담회** 등 **현장**의 **의견 수렴** 결과를 토대로 '**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**'과 '**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**'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**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&D 규정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**을 통해 추진된다.

○ **지원 대상 기업**은 **산업부, 과기정통부, 중기부**가 지원하는 정부 R&D사업을 수행하는 **모든 중소·중견기업**이며,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
○ **지원 대상 과제**는 올해 **신규과제**와 작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**계속과제**도 포함해,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.

○ **지원 내용**은 **단기간 내** 조치가 가능한 **부처별 행정규칙**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,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.

□ **지원 내용**에는 **부처 공통 지원 내용**과 특정 부처에서 **추가로 지원하는 내용**이 있는데, 먼저 부처 공통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,

❶ 첫째, 현재 신규채용 연구 인력 인건비만 정부가 지원하고 기존 연구 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에서 **모든 연구 인력 인건비**를 **정부**가 **지원**(1.2조 추산)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❷ 둘째, 정부 R&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**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**을 **축소**하고, 민간 부담금 중 **현금 비중**도 **대폭 완화**한다.

※ (중소기업) 민간부담금 비율: 최대35%→20%, 현금비중: 최대60%→10%,
(중견기업) 민간부담금 비율: 최대50%→35%, 현금비중: 최대50%→10%

- 이 조치로 약 **1조원**의 **참여 기업 부담이 경감**되고,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,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한 **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**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.

* 부처별 민간부담완화(현금부담) 전망 : 과기부 426억원(137억원), 산업부 6,538억원(5,117억원), 중기부 2,960억원(2,960억원)

< 중소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>

	민간부담금		민간부담금中 현금비중	
	현재	변경	현재	변경
과기정통부	25%	**20%** (중기부 창업성장 R&D 최대 10%)	과학기술 10% ICT 20%	**10%** (과기정통부 과기분야 **5%**)
산업부	33%		40%	
중기부	35%		40~60%	

< 중견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>

	민간부담금		민간부담금中 현금비중	
	현재	변경	현재	변경
과기정통부	40%	35%	과학기술 13% ICT 26%	10% (과기정통부 과기분야 8%)
산업부	50%		50%	

❸ 셋째, 기업이 정부의 R&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10~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**정부납부기술료**의 **납부 기간**을 **부처별 예산 상황** 등을 **반영***해 **최대 2년**까지 **연장**한다.

*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·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료의 60%를 납부연장

- 또한,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(사업)별로 **정부납부기술료 감면**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.

❹ 넷째, 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 변경에 따른 **연구 목표, 연구 기간, 연구 계획 변경** 등을 적극 허용한다.

❺ 다섯째,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,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**연구비의 유연한 집행**을 허용한다.

□ 이와 함께 **부처별 추가 지원**이 이루어진다.

❶ 산업부는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 **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**으로 **적용하지 않을 계획**이다.

-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**수행 기업이**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의 **재무요건 기준**을 **충족하지 못하면 과제**를 **중단하도록** 하고 있으나,

- 코로나19로 올해 **재무상황**이 일시적으로 **악화된 기업의 경우 R&D를 계속 수행**할 수 있도록,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 **재무요건**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.

❷ **과기정통부**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**기업 부담**을 추가로 **완화**한다.

- 지역대학·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**기초연구사업**(선도연구센터) 참여기업의 경우 **'20년 현금 부담금**을 **한시적**으로 **완전 면제**할 계획이며,

※ ('20년 기준) 기업이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46개, 총 현금부담금 28억원 규모

- 특히, **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***, **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** ('20년도 신규과제)는 정부납부기술료도 **일괄 면제**할 계획이다.

* 산·학·연 융합에 기반,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 품목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

❸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**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***에 대해서는 **민간부담금**을 **현행 20%에서 10%**까지 **추가 완화**한다.

* ('20년)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4,779억원 지원

- 아울러 전체 R&D 사업의 **출연금 지급시기**를 당겨서 **R&D 자금을 최대 3개월**까지 **조기 집행**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* 신규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선지급(최대 50%)하고,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전이라도 출연금 조속 지급

- 또한 **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**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&D 신청 시 **자격요건**을 **완화***하고 **가점을 부여**할 예정이다.

* 참여제한(부채비율 1,000%, 전액 자본잠식) 적용 제외

□ 이번 조치는 **4월 중순**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**제·개정**이 **완료**된 이후 **즉시 시행**된다.

○ **지원 절차**는 **각 부처 전문기관별**로 **4월 중순**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&D 사업에 참여하는 **기업**에 **안내**하고, 지원을 **희망하는 기업**의 **신청**에 따라 신청 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**과제 협약 변경**이 이루어진다.

- 아직 **협약**이 **체결되지 않은** 과제는 **기업**의 **신청 없이**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 내용을 포함해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.

○ **지원 기간**은 일단 올해 **연말**까지 **한시적**으로 시행하되, 연말 상황을 고려해 **지원 연장**을 **검토**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나리 사무관(☎ 044-202-6953), 산업통상자원부 조원철사무관(☎ 044-203-45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